

### <要 約>

- 外換制度改革小委員會가 제시한 「外換制度 改革 方案」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대외활동과 관련된 外換去來는 빠른 속도로 자유화하되 資本去來 자유화는 그 巨視 經濟的 영향을 고려하여 가급적 완만한 속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.
- 기업측면에서의 기대효과는,
  - 경상거래의 자유화로 인해서는 기업활동이 보다 원활히 될 수 있음.
  -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통해서 기업 자금조달 방법이 다양화되고 자본비용의 부담이 경감되며 저렴한 해외 생산거점의 확보를 가능하게 함. 이는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.
  - 또한 外換集中制의 廢止로 인한 외환위험의 감소도 기대됨.
  - 그러나 대부분의 완전 자유화가 98년 이후로 연기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96년이 후(제2단계)에나 보다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.
- 本 外換制度 改革 方案은 단계별, 사항별 추진 방향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시행 내용이 없으며, 아직도 國稅廳 通報 但書나 審査附 申告制, 許可制라는 용어로 규제의 餘地를 남겨놓고 있음.
- 구체적으로 改革案에 제시된 사안들 중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을 지적해 보면,
  - 첫째, 資本去來의 性格의 經常去來는 핫머니가 아니고 6개월간의 단기 자금 조달 방법 이므로 早期에 완화해야 함.
  - 둘째, 기업의 설비투자 등을 중심으로 한 長期 借款을 허용하고, 98~99년에는 현금 차관 도입이 자유화되어야 할 것임.
  - 셋째, 견실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외화대출 방안을 모색해야 함.
  - 넷째, 자금 운용에 대한 포지션규제도 여타 부문의 완화와 一貫性을 유지해야 함.
- 外換管理 改革案의 施行 時期는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伸縮的으로 조정되어야 하며, 資本去來의 자유화나 資本去來의 性格의 經常去來 자유화로 인한 攪亂 效果에 대한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자본 流入出을 균형시키려는 노력이 요망됨.
- 改革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經濟 安定 基調의 維持와 政策手段間의 효율적인 調和, 政府 部處間의 共助라는 제반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.

## I. 趣旨

- 外換制度改革小委員會는 9월 8일에 지금까지 外貨 逃避 豫防과 國際收支 防禦 위주로 운용돼 온 외환제도를 개선하여 대외거래의 자유화를 조속히 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「外換制度改革 方案」을 제시하였음.
- 이 方案은 세계무역기구(WTO)의 출범과 오는 96년으로 예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가입을 앞두고 국내 기업의 競爭力 提高를 목적으로 마련되었음.
- 향후 5년간 1단계(95년), 2단계(96~97년), 3단계(98~99년)에 걸쳐 국내 외환제도를 全面 改廢하여 99년까지 원貨의 國際化 등 극히 일부만 제외하고 완전 자유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취지임.
- 외환제도 개혁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대외활동과 관련된 外換去來는 빠른 속도로 자유화 하되 資本去來 자유화는 그 巨視 經濟的 영향을 고려하여 가급적 완만한 속도로 진행하는 것임.

## II. 主要 內容

### 1. 經常去來

- 경상거래는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하루 빨리 자유화한다는 것이 주된 방향임.

<기업 관련 외환제도 개혁 내용>

| 기업관련 항목         | 1단계자유화<br>(95년)                    | 2단계자유화<br>(96~97년)                | 3단계자유화<br>(98~99년)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경상거래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수출입관련<br>수수료    | 은행 인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유화(신고제)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해외사무소<br>유지활동비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유화(신고제)<br>(일정금액 초과시 국제<br>청 통보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수출선수금           | 한도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한도 추가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| (제1안) 한도 확대 지속<br>(제2안) 사실상 자유화 |
| 연지급수입           | 수입기간 연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입기간 연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입기간 연장(국제관례<br>수준: 180일)       |
| 자본거래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상업차관<br>도입      | SOC관련 및 고도기술 수반<br>외국 투자기업 시설재 도입  | 일반기업의 시설재 도입                      | 시설재 도입용 자유화<br>(현금차관은 허가제)      |
| 해외증권<br>발행      | 주식상장 자유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식연계증권 발행 자유화                     | 주식 비연계증권 발행<br>자유화              |
| 외화대출            | 용도 제한 완화 및 음<br>자비율 폐지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현지금융            | 용도제한 폐지, 자유화<br>(신고제)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해외직접<br>투자      | 투자 제한사업 대폭 축소,<br>허가 기준금액 상향<br>조정 | 전면 자유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해외부동산<br>투자(법인) | 일정금액내 자산운용용<br>부동산 취득 허용           | (제1안) 기준금액상향조정<br>(제2안) 자유화       | (제1안) 자유화                       |
| 외환거래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외환집중제           | 집중제 정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- 92년 10월 외환관리법 개정시 原則自由方式(negative system)으로 전면 전환된 데 이어 94년 6월 韓銀 허가사항을 銀行 認證으로 완화하여 이미 자유화가 상당히 진전되어왔음.
- 그동안 禁止 項目의 縮小, 例外 規程의 透明性 提高, 決濟 節次의 簡素化 등이 많이 지적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認證制를 97년까지 申告制로 전환하도록 함.
- 은행의 인증제도를 폐지해 정부나 韓銀의 허가와 은행의 신고 사항으로 구분함으로써 은행의 서류 심사 기능을 없애 실질적인 경상 지급 자유화를 도모하였음.
- 신고제의 도입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過多 經費 處理 등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은 허가제를 유지하거나 거래 내역을 國稅廳에 通報하도록 하고 있음.

## 2. 資本去來

- 資本去來의 자유화는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經常去來보다는 점진적인 방식으로 추진하되 유사시 규제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임.
- 자본거래 중에서도 기업의 자금조달 부분은 늦어도 96년부터는 자유화될 예정임.

## 3. 外換去來

- 外換去來의 경우 外換集中制, 외화자금조달 규제, 實需要證明制度, 금융선물제도에 대한 규제 등은 早期에 폐지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.
- 한편 국외 지점 및 현지법인의 업무와 域外金融에 관련된 규제는 3단계까지 지속됨.

### III. 期待效果

- 전반적으로 볼 때 외환제도 개혁을 통한 漸進的인 規制 緩和로 인해 기업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당분간은 기업에게 커다란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96년 이후(제2단계)에는 보다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.

#### 1. 肯定的인 部門

- 이번의 외환제도 개혁방안이 기업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일단은 기업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.
- 기업의 직접적인 활동과 관련이 있는 經常去來의 段階的 自由化는 매우 바람직함. 경상거래의 자유화로 기업활동에 있어 불필요한 절차가 없어짐으로써 기업의 활동은 보다 원활하게 되는 효과가 있음.
- 자본거래 중 商業借款 導入, 海外證券 發行, 現地金融 등의 자유화는 기업 자금조달 방법의 다양화를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.
- 자본비용이 저렴한 해외 자본시장으로부터의 자본조달은 국내 고금리로 인한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음.
- 자본의 유출과 관련하여 海外 直接投資 및 海外 不動産投資의 自由化는 저렴한 해외 생산거점의 확보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寄與할 것으로 판단됨.
- 해외의 저렴한 생산거점의 확보는 生産費用의 節減을 통하여 採算性을 확보하고 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.
- 外換集中制의 廢止는 은행에 등록할 필요없이 외화의 보유를 가능하게 하므로 결제통화의 교환으로 인한 기존의 외환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.
- 기업이 보유 외화로 對外決濟를 할 경우 극심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외환 위험을 상당히 회피할 수 있음.
- 현재 국내 기업의 換差損 規模가 환율변동으로 인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외환집중제의 폐지는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음.

## 2. 未洽한 部門

-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환제도 개혁을 단계별로 실시하는 것에  
는 이해가 가지만 대부분의 완전 자유화가 98년 이후로 연기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 
자유화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크게 未洽할 것으로 보임.
- 특히 기업활동과 관련된 11개 항목중에서 5개 항목이 98년 이후에 자유화될 예정  
으로 있고 이중 상업차관 도입과 관련해서는 施設材 導入用 상업차관만이 자유화  
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.
- 외환제도 개혁의 방향은 규제 완화이지만 95년에는 외화대출 및 현지금융의 자유  
화, 외환집중제의 폐지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임.
- 단기적으로 외환제도 개혁이 기업에게 커다란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  
으며 보다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는 96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.

## IV. 問題點과 改善 方向

- 本 外換制度 改革 方案은 단계별, 사항별 추진 방향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시행  
내용이 없음.
- 96년 OECD 가입이후에는 자본시장 개방 압력이 더욱 가증될 것이 분명한데, 본  
改革案에 의하면 이미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이 자유화되어 있는 經常去來를 비롯  
하여 상당 부분이 원칙예외방식(positive system)을 유지하고 있는 資本去來에 이  
르기까지 규제가 불필요한 부분들이 殘存해 있음.
- 또한 아직도 國稅廳 通報 但書나 審査附 申告制, 許可制라는 용어로 규제의 餘地  
를 남겨놓고 있음.
- 구체적으로 改革案에 제시된 사안들 중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을 지적해 보면 다  
음과 같음.
- 첫째, 延支給, 輸出 先手金·着手金과 같은 資本去來의 性格의 經常去來는 핫머니가  
아니고 6개월간의 단기 자금 조달 방법이므로 早期에 완화해야 함.
- 둘째, 3단계까지 신고제로 고수되고 있는 상업차관 도입 및 해외증권 발행 등 해  
외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금 조달 費用을 節減할 수 있도록 완화 폭을  
확대해야 함.

- 3년이하의 商業借款을 우선 허용하는 것은 단기성 자금의 유입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설비투자 등을 중심으로 한 長期 借款부터 허용해야 함.
- 施設材用 借款은 허용하면서 現金 借款을 3단계까지도 許可制로 남겨 놓은 것은 시설재의 外國產 비중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. 따라서 앞으로 2~3년내에는 국내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현금 차관을 허가제로 하더라도 자유화의 마지막 단계인 98~99년에는 자유화해야 할 것임.
- 세째,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을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外貨貸出制度를 개선했다고 하지만 과연 擔保力도 약하고 대외거래 경험이 적은 중소기업이 이러한 外貨貸出을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 지가 의문시됨. 따라서 건실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외화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.
- 네째, 포지션 規制도 3단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자본시장 개방의 확대에 따른 금융기관의 對外 競爭力 強化에 있어 이는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자금 운용에 대한 포지션 규제도 여타 부문의 완화에 一貫性을 유지해야 할 것임.
- 궁극적으로 外換管理에 대한 改革案이 단계별로 계획된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施行 時期를 伸縮的으로 조정해야 함.
- 신고제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慣行이 지속된다면 實效가 없을 것임.
- 한편 資本去來의 자유화나 資本去來의 性格의 經常去來 자유화로 인한 攪亂 效果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하며 자본 流出入에 대한 균형 감각이 요망됨.
- 資本 流入에 대한 규제는 국내외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완화되고 있는 반면 資本 流出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써 국내 자본 유입 증가분의 否定的 效果에 대해서는 너무 간과하고 있음.
- 資本의 流入에 대한 規制 緩和와 資本의 流出에 대한 許容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임.
- 외환제도의 개혁에 있어 그에 따른 부작용을 정책 수단간의 조화를 통해서 해결 하도록 하고, 개혁의 추진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망됨.
- 改革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經濟 安定 基調의 維持와 政策手段間의 효율적인 調和, 政府 部處間의 共助라는 제반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.

<參考 資料>

1. 경상거래 관련 개혁안

|                         | 항목                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혁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기업의 대외<br>활동관련<br>외환 거래 | 물품의 수출입<br>관련 수수료 | 수출입 대금의 10%<br>또는 20만 달러 초과<br>시 韓銀 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95년: 韓銀 총재 인증→외국환은행장<br>인증<br>- 96년이후: 외국환은행 신고제로 사실상<br>자유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외사무소<br>유지 활동비   | 기본 경비 및 사무소<br>유지 활동비 월 2만<br>달러, 주재원 1인당<br>월1만 달러, 용도외나<br>금액 초과시 한은 총<br>재 허가 필요                 | - 96년이후: 외국환은행 신고만으로 가능<br>(단 일정 금액 초과시 국세청에 통보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개인의<br>외환 거래            | 해외여행 경비           | 기본 경비 5천 달러,<br>유학생의 경우 기본<br>경비 월 2천 달러, 현<br>지 정착비 1만 달러,<br>체제비 월 2천 달러 이<br>상은 외국환은행의 인<br>증 필요 | -(제1안) 95년: 항목별 한도 폐지,<br>총경비한도제 도입<br>96년이후: 자유화하되 일정액<br>이상만 허가사항화<br>-(제2안) 95년: 항목별 한도 폐지,<br>총경비한도제 도입<br>96년이후: 신고사항으로 전환<br>98년이후: 한도 폐지 |
| 자본거래적<br>성격의<br>경상 거래   | 해외 이주비            | 세대주 10만 달러, 세<br>대원 1인당 5만 달러,<br>투자사업비 30만 달러<br>의 한도 초과시 한은<br>총재 허가 필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96년이후: 일정액이내 지급 자유화하되<br>금액 초과시 허가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출 선수금<br>· 착수금   | 영수한도는 전년도 수출<br>실적의 5%(중소기업은<br>10%) 또는 진당 수출 금<br>액의 20%로 제한, 120일<br>이내에 수출 이행해야 함                | -(제1안) 단계적 확대<br>-(제2안) 98년이후: 수출선수금 영수한도<br>전년도 수출실적의 30%로 확대<br>해 사실상 자유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자급 수입            | 관세율10%이하 품목<br>(인근 지역 내수용은<br>5%) 중 수출용은 150<br>일, 내수용은 60일로<br>외상 수입 가능 기간<br>제한                   | 국제적 관례 수준인 180일로 단계적으로<br>연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

2. 자본거래 관련 개혁안

|                    | 항목                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혁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기업의<br>해외<br>자금 조달 | 상업차관<br>도입        | 韓銀 등 공기업에만 자본재 수입용에 한해 재무부 장관 승인에 의해 허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95년 이후: SOC 관련 기업 및 고도기술을 수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시설재 도입용에 한해 허용<br>- 96년 이후: 일반기업에 대해서도 시설재 도입 허용<br>- 98년 이후: 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 도입은 자유화되고 현금차관은 허가제로 유지(단, 기존 차관을 만기내에 차환하기 위한 차입은 95년부터 심사부 신고사항으로 전환) |
|                    | 해외증권<br>발행        | 자기자본 2백억원 이상으로 최근 3년간 누적해 당기 순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자본재 도입용이나 해외 투자용, 해외 사업용으로 연간 한도(94년은 25억 달러)내에서 발행 신고 수 | - 95년: 주식 상장 자유화<br>- 96년 이후: 주식연계증권(CB, DR, BW 등) 발행 자유화, 한도제 폐지<br>- 98년 이후: 양키본드 등 주식비연계증권 발행 자유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외화대출              | 한도, 용도, 용자비율 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95년 중 용도 제한 완화 및 용자비율 규제 폐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현지금융              | 용도 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95년 중 용도 제한 폐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국내<br>자본시장<br>개방   | 주식시장<br>개방        |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한도가 종목당 10%, 개인당 3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(제1안)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한도의 지속적인 확대<br>-(제2안) 98년 이후: 국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한 투자 한도 폐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채권시장<br>개방        | 중소기업 발행 CB 및 저리국 공채 투자 허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95년: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의 제한적 허용<br>- 96년 이후: 중소기업 무보증 장기채 직접 투자 허용<br>- 98년 이후: 국공채를 포함한 국내 상장채권에 대한 직접투자 제한적 허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외국인<br>국내증권<br>발행 | 불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(주식 발행) 95년 자유화<br>-(채권 발행) 95년 허가제→96년 심사부 신고→ 98년 자유화(단, 원화 표시 채권 발행을 통한 원화 반출은 제한적 허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해외<br>직접투자        | 14개 업종으로 투자 제한, 30만달러이하 은행 인증, 1천만 달러이하 심사부 신고, 1천만달러 초과는 허가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95년: 투자 제한 사업 축소, 허가 금액 상향 조정<br>- 96년 이후: 전면 자유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해외<br>자본<br>유출     | 해외<br>증권투자        | 기관투자자: 단자, 연기금은 회사당 1억 달러, 수출기업은 수출실적의 30%(3억 달러) 이내<br>일반투자자: 개인 1억원, 법인 3억원으로 제한                 | -(제1안) 95년: 기관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 전면 자유화, 일반투자자의 투자 한도 확대<br>96년: 상장주식 투자 제한 철폐<br>98년: 비상장채권 투자 전면 자유화, 비상장 주식투자 제한 완화<br>-(제2안) 95년 중 상장 주식투자 제한 철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해외<br>부동산<br>투자   | 법인의 경우 해외투자 관련 및 기관투자자의 자산 운용용만 허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95년: 일반 기업의 자산 운용용 부동산 취득 허용, 일정액 이하의 자유화하고 기존 금액을 점차 상향 조정<br>- 98년 이후: 완전 자유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3. 외환거래 관련 개혁안

| 항목          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혁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외국환<br>은행제도 | 상환기간 3년이상인 중장기<br>외화자금 조달 대출의 50%이상을 중장기<br>자금으로 조달토록 규정 | - 95년: 규제 폐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외국환은행 해<br>외지점 개설 및<br>현지법인 설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95년: 규제 완화<br>- 98년이후: 자유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국외지점 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96년이후: 거주자에 대한 대출 허용 등<br>자유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거주자 대출 등 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외환거래<br>제도  | 포지션규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95년~97년: 한도 상향 조정<br>- 98년이후: 현물환 옵션 매도 한도 추가<br>확대 또는 폐지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실수요증명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95년: 선물환 및 금융선물거래의 實需<br>要증명 제출 의무 면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외환집중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95년: 외환집중제도 폐지(취득한 외화는<br>5만달러 초과시에도 은행 등록 필<br>요없이 자유로이 보유 가능)         |
|             | 금융선물거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95년: 금융선물거래 중개회사 지정 및 금융<br>선물 관련 각종 규제 폐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외환시장<br>제도  | 역외금융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95년: 역외금융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<br>회계처리상 조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96년: 역외금융관련 법령 정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95년: 자금중개실을 독립 법인으로 전<br>환해 상업적 브로커제를 도입,<br>외화 자금 중개 전문회사 설립<br>근거법 마련 |
|             | 외환브로커<br>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96년이후: 복수의 외화 자금 중개 전문<br>회사 설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